

「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5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5월 17일

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환경교통국장 박 은 희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리자의 책무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입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관리자의 책무 신설(안 제4조)
-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(안 제4조의2)
- 기타 용어의 정비 등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¹⁾(2023. 7. 21.)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1) 제7조(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)
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.

○ 검토 결과,

- 시장이 설치·관리하는 개방화장실,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과 같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로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미설치 화장실이 163개소(공중화장실 83개, 개방화장실 80개)로 집계되는 바,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하여 효과적이고 일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

- 공중화장실 시설의 유지관리와 신속한 조치를 위해 안내문 비치 및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 알림 카드 비치에 대한 조항 명문화가 필요함

6. 소수의견의 요지:

-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의 확충이 필요
- 공중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 관리 인력 충원으로 청소·관리의 주체 명확화 필요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